

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

(제정 1984. 8. 1.)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제2조(장학금 종류)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12.27.>

1. 신입생 장학금 <신설 2013.12.27.>
2. 재학생 장학금 <신설 2013.12.27.>
3. StarT 장학금 <신설 2013.12.27.>

제2조의2(신입생 장학금 종류 및 기준액) ① 신입생 장학금의 종류별 수혜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신입생 선발 및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학처장의 요청에 따라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종류별 장학금 항목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[본조 제2조의2에서 제2조의1로 이동, 2013.12.27.] <개정 2014.1.1., 2022.6.17.>

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입생 장학금의 종류와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적우수장학금

가. 신입생전체수석장학금(수시, 정시, 추가): 신입생 전형에서 수퍼스타 1종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명을 선발하여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, 연간 도서비 600만원(매월 50만원)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0.9.14., 2013.12.27., 2022.6.17.>

나. 수퍼스타장학금(수시, 정시, 추가)

1) 수퍼스타1종: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, 수학,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인 자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이내 범위에서 전형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. 선발된 자는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, 연간 도서비 480만원(월 40만원)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0.9.14, 개정 2013.12.27., 2016.7.19., 2022.6.17.>

2) 수퍼스타2종: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, 수학,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인 자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이내 범위에서 전형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. 선발된 자는 3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, 연간 도서비 360만원(월 30만원)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0.9.14., 2013.12.27., 2016.7.19., 2022.6.17.>

3) 수퍼스타3종: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, 수학,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등

급 이내인 자 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이내 범위에서 전형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. 선발된 자는 2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, 연간 도서비 240만원(월 20만원)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0.9.14., 2013.12.27., 2016.7.19., 2022.6.17.>

다. 삭 제 <2022.6.17.>

라. 입학성적우수장학금(정시): 정시모집 수능위주(일반학생) 모집인원 대비 전형 총점순 상위 5% 이내에서 선발하며, 입학 첫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0.9.14., 2013.12.27., 2022.6.17.>

마. 입학성적우수장학금(정시): 정시모집 수능위주(일반학생) 모집인원 대비 전입학성적우수장학금(수시): 수시모집 학생부교과(일반학생), 실기/실적(일반학생), 학생부종합(일반학생) 전형에 합격한 자 중, 학과 수석에게 입학 첫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 형 총점순 상위 5% 이내에서 선발하며, 입학 첫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0.9.14., 2013.12.27., 2022.6.17.>

바. 해외연수장학금: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해외연수 시 장학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사. 삭 제 <2016.2.12.>

아. 삭 제 <2022.6.17.>

자. 삭 제 <2016.2.12.>

차. 삭 제 <2016.2.12.>

카. 경연대회장학금: 본교에서 주최하는 전국 고교 음악·미술경연대회 입상자가 본교에 입학할 경우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1) 전체우수(대상) 2명: 입학금과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2) 분야별 최우수(1등) 2명: 입학금과 1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타. 삭 제 <2022.6.17.>

2. 우대장학금 <개정 2015.8.26.>

가. 창업인재전형장학금: 창업인재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창업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7.> <개정 2015.4.2.>

나. 특기자장학금: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학 시 입학금과 소정의 수업료 및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.0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12.27., 2015.1.1., 2016.7.19., 2023.9.27.>

다. 편입우대장학금: 본교 편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입학금을 지급한다. <신설 2013.12.27.>

- 라. 재단우대장학금: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산하 고등학교, 전주비전대학교 및 본교 졸업생 중 본교에 신·편입학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27., 2015.8.26., 2024.2.28>
- 마. 고교우대장학금: 해당년도 본교에 등록한 신입생에게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0.27.>
- 바. 특수환경지원장학금: 아동복지시설에서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,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가출·행방불명인 자,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교도소 수감 중인 자[해당증빙서류 및 주민등록(호적)등본 제출]에 대하여 매학기 수업료 60%와 학업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한하며, 직전학기 평점평균 2.0이상이어야 한다. <신설 2015.8.26.>
- 사. 특별전형장학금: 기회균형선발, 고른기회대상자, 농어촌학생, 특성화고교졸업자,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, 장애인 등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입학 첫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 <신설 2022.6.17.>
- 아. 수퍼스타(동문)자녀장학금: 부 또는 모 1명 이상이 본교 학사과정 졸업생인 경우, 입학 첫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 <신설 2022.6.17.>
3. 교육지원대상자 및 군 관련 장학금 <개정 2013.10.27.>
- 가. 보훈장학금
- 1)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(손)자녀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10.27.>
 - 2) 보훈장학금 수혜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0.27.>
- 나. 군위탁장학금: 육군 제35보병사단에 근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이 본교에 입학 시 매학기 수업료의 30%를 지급한다. 다만,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0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10.27.>
- 다. 북한이탈주민장학금 <개정 2013.10.27., 2016.7.19.>
- 1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입학금과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2.0 이상이어야 한다.
 - 2) 총 수혜횟수 초과자는 별도로 소정의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3) 수혜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4. 교직원복지관련장학금 <개정 2023.12.15.>
- 가. 교직원자녀장학금: 본교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금과 4년간 수업료의 90%를 지급한다. 본교 재직자 자녀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과 전임 직원의 자녀와 법인사무국 직원의 자녀를 말한다. <개정 2013.10.27.>
- 나. 학원봉직자자녀장학금: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의 봉직자 자녀에 대하여 매학기 소정의 수업

료를 지급한다. 본 학원 봉직자란 전주비전대학교, 전주영생고등학교, 전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교원 및 일반직을 말한다. <개정 2013.10.27.>

다. 순직자자녀장학금: 본교 재직 중 순직한 교직원의 자녀에게 입학금과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13.10.27.>

제2조의3(재학생 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액)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학생 장학금의 종류와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12.28., 2013.12.27.>

[본조 제2조의3에서 제2조의2로 이동, 2013.12.27.]

1. 성적우수장학금

가. 학부(과)수석장학금: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인 자 중에서 학부는 재학생 50명당 1명, 학과는 수석 1명에 대하여 수업료 65%를 지급한다. <개정 2013.10.27., 2015.1.1.>

나. 성적우수장학금: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인 자 중에서 학부(과) 수석을 제외한 성적 우수자를 성적순에 따라 선발하여 수업료의 30%를 지급한다. <개정 2013.10.27., 2015.1.1.>

다.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사정시까지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자 및 당해학기 전과(부)를 한 자는 그 당해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다. <신설 2013.10.27.>

2. 삭 제 <2015.1.1.>

3. 가계곤란관련장학금

가. 재해장학금: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>

나. 가족장학금: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 2명 이상이 본교(일반대학원 포함)에 재학 중일 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모두에게 각각 수업료의 40%를 지급한다. <개정 2013.10.27., 2015.1.1.>

다. 장애인자녀장학금: 부모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 <개정 2013.10.27., 2022.6.17.>

라. 장애대학생장학금: 장애인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수업료에서 차등 지급한다. 수혜대상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은 없으나,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이 2.0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10.27., 2022.6.17.>

마. 삭 제 <2015.8.26.>

바. 나눔장학금: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0~ 8분위로 산정된 자 중에서 장학생을 선정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, 2015.8.26.>

사. 삭 제 <2015.8.26.>

아. 삭 제 <2015.8.26.>

자. 삭 제 <2015.8.26.>

차. 삭 제 <2015.8.26.>

카. 삭 제 <2015.8.26.>

타. 장학사정관제장학금: 가계상황이 긴급하게 어려워진 학생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.0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10.27.>

파. 이사장장학금: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(소득분위 8분위 이내)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10.27., 2015.1.1.>

하. 기독교 목회자 및 자녀 장학금: 당국에 등록된 교회의 기독교 목회자 또는 그 자녀로서 선교봉사처장이 추천한 자(소득분위 0~8분위)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수업료에서 지급한다. <신설 2015.1.1.> <개정 2015.8.26.>

4. 근로관련장학금

가. 보람장학금: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가 학교 내 행정부서에서의 근로 체험 및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를 하였을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>

나. 국가근로장학금(대응):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학교 내의 행정부서, 교외 전공산업체 등에서 근로 체험을 하게 한 후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>

다. 복음장학금: 본교의 설립목적에 입각하여 선교봉사처장의 추천으로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근로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, 2014.1.1.>

라. 알리미장학금: 대학의 홍보대사, 웹 서포터즈 및 그 밖의 대학의 알리미 활동을 제공한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>

마. 미디어장학금: 신문사 및 방송국 등에서 국원과 기자로 활동하는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>

바.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(대응): 장애학생도우미로 활동한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>

사. 코칭장학금: 대학 생활 정착 및 학습, 학생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멘토링, 튜터링, 모니터링, 또는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선발되어 활동한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7.>

5. 글로벌도전장학금: 도전하는 창의적 글로벌 전문인 양성을 위해 재학 중인 자에게 해외 단기 어학연수장학금, 해외 교환학생장학금, 해외 현장학습장학금, 해외 인턴십장학금, 해외 복수학위장학금, 해외봉사장학금, 해외 학부(과)특성화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, 2015.8.26.>

6.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유학생장학금, 외국인성적우수장학금, TOPIK장학금, 입학장학금, 수퍼스타장학금, 입학성적우수장학금, 입학축하장학금, 성적향상장학금, 졸업성적우수장학금, 특별장학금, 기타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, 2016.2.12.>

7. 기타장학금

- 가. 해외문화탐방장학금: 전공관련 해외 기관들을 방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선정된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- 나. 추천장학금: 본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고등학교 및 기관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아 소정의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>
- 다. 섬김장학금: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는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수혜대상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은 없으나,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.0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3.10.27., 2022.6.17.>
- 라. 고시장학금: 재학생 중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고시와 이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, 2017.12.20.>
- 1) 국가공무원 5급 공채(행정, 기술) 및 외교관후보자선발, 공인회계사, 변리사 1차 시험 합격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, 최종합격 시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2.20.>
 - 2)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관세사, 법무사 1차 시험 합격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, 최종합격 시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2.20.>
- 마. R.O.T.C장학금: 학군단장이 추천한 R.O.T.C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>
- 바. 다문화장학금: 다문화가정의 이주민 및 자녀가 본교에 입학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매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2.0 이상이어야 한다. <신설 2013.12.27.> <개정 2016.7.19.>
- 사. 만학도장학금: 본교에 재학중인 만 40세 이상인 자에게 매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0이상이어야 한다. <신설 2013.12.27.>
- 아. 자기향상장학금: 재학생의 도전의식 함양, 개인역량 증진, 학업성과 향상, 취업 경쟁력 확보 등의 자기향상 노력을 경주한 자 중 대학내 행정부서에서 자기향상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각종 성과성 및 동기부여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7.>
- 자. 특별장학금: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수혜기준은 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13.10.27.>
- 차. 자기개발장학금: 자기개발학기제를 신청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7.>
- 카. 현장취업체험장학금: 대학내 행정부서에서 진행하는 현장취업체험학습 파견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5.8.26.>
- 타. 특성화장학금: 대학의 특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소정의 특성화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5.8.26.>
- 파. 교내대응장학금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유관기관의 사업 운영 장학금 지급 시 소정의 대응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5.8.26.>

- 하. 취업활동장학금: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한 학생에게 동기부여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6.2.12.>
- 거. 창업마일리지장학금: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마일리지를 쌓은 학생에게 성과성 및 동기부여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6.7.19.>
- 겨. 학업장려지원장학금: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소정의 동기부여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6.7.19.>
- 고. 사회봉사장학금: 사회봉사센터 국내·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7.6.22.> <개정 2023.9.27.>
- 교. 공공인재장학금: 정부·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공인재연계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0 이상이어야 한다. <신설 2023.9.27.>

제2조의4(StarT장학금 종류 및 기준액)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학생 장학금 중 StarT장학금의 종류와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. [본조 제2조의4에서 제2조의3으로 이동, 2013.12.27.] <개정 2013.12.27.>

1. StarT장학금 : StarT Program에서 취득한 인증포인트(Certification point : CP) 및 장학포인트(Scholarship point : SP)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.

- 가. 수퍼스타 인증에 따른 해외연수장학금 : 500점 이상의 장학포인트(SP)를 취득하고 수퍼스타로 인증된 자에게 해외연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>
- 나. StarT장학금 : 장학포인트(SP) 취득자로 본인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1포인트 당 소정의 StarT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수퍼스타 인증을 위해 학생은 장학포인트를 StarT장학금으로 수혜하지 않을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7.> <개정 2017.6.22.>

제3조(장학금 지급 시행안 심의) 학생취업처장은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장학금액 및 장학생 배정에 대한 시행안을 작성하여 장학심의위원회에 상정·심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, 총장의 결재를 받아 장학명, 장학금액, 지급대상 등을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2.5.18., 2013.12.27., 2016.7.19.>

제4조(장학금 신청 및 지급)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3.12.27.>

- ②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시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기 등록자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해 감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되,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이 있는 자는 학자금 대출상환 지급을 우선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7.>
- ③ 계속장학생의 경우 계속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중지된 학기도 지급기간 학기에 포함한다. <신설 2013.12.27.>

제5조(장학생의 확정)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학업성적 또는 이중지원, 등록금 초과 지급 등의 장학금 지급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장학생을 확정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②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③ 확정된 장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,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무효로 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제6조(봉사장학생의 처리) 봉사장학생 근무 내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동점자 처리)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를 결정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1. 평점평균이 높은 자 <개정 2013.12.27.>
2. 평점총점이 많은 자 <개정 2013.12.27.>
3. 취득학점이 높은 자 <개정 2013.12.27.>
4. 백분율 평균 점수가 높은 자 <개정 2013.12.27.>
5. 연장자 순위

제8조(행정사항) 각 단과대학 및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신청기한 및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장학생선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, 추천기일 경과 후에는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부 칙

이 세칙은 198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8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8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8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9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9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97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세칙은 200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2조 제10호 (본 대학교 교직원 자녀 장학금)에 대한 세칙 중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교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학비감면하되, 2명이 동시에 재학중일 때에는 1명은 등록금 전액, 1명은 등록금의 50%를 학비감면한다.

③ (경과조치) 제2조 제11호(본학원 봉직자 자녀 장학금)에 대한 세칙 중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원 봉직자 자녀 1명에 한하여 매 학기 등록금의 50%를 학비감면한다.

④ (경과조치) 학생지원실과 총무지원실은 본교 학비감면 및 타교 학비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며, 전임교직원별(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 1인으로 간주) 통산 2명의 자녀에 한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세칙은 제2조 22호 및 34호, 35호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세칙은 제2조 17호는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제2조 22호 및 26호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 제2조 36호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입생 및 편입생도 36항에 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 제2조 22호, 26호는 200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1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5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4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7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7년 6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7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6.17.>

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9.27.>

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12.15.>

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4.2.28.>

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